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4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의자 : 안도걸 · 윤준병 · 이용선

복기왕 · 서삼석 · 정준호

정진욱 · 임호선 · 조계원

양부남 의원(10인)

## 제안이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

(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빌)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의 유지의무 및 인가의 취소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상품설명서 작성 · 공시의무,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의무 및 이자 지급 금지 의무, 상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관리 의무, 안전성확보의무,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보험가입,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그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 조사권한,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처분 및 그 외 건전 경영, 운영실패 시 처리 등 관련 조치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

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긴급조치명령 요청,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 원장에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근거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한 종류의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고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마.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분산원장”이란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4. “준비자산”이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이 법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자산 발행잔액의 가치에 상응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을 말한다.

5.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6.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7. “이용자”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의 권리 또는 청약의 수락 등에 관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역외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책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환거래 관련 의무 준수) 누구든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유통, 이용함에 있어 외환시장의 건전성 및 질서유지, 통화 가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가 요건 및 절차

제7조(인가 및 인가요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관

나.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 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나 외국 법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10.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인가 요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7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90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한도,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외환 및 통화 정책 준수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내용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심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및 제5항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그 신청내용에 따른 인가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가요건의 유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7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대주주 변경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금융회사”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으로 본다.

제11조(예비인가) ① 제7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외환 및 통화 정책 준수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인가의 내용이나 제8조제4항에 따라 부가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파산 등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실패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합병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장 발행 및 상환 등

제13조(무인가 발행행위 금지) 누구든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발행 신고)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새로운 가치안

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6.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안정 구조에 관한 정보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 기술,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백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의 신고는

그 백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백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발행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백서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백서의 첨부서류, 신고, 변경신고 및 철회신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품설명서 작성 · 공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에는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디지털자산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준비자산의 구성 및 안전한 관리)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비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2.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잔액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잔액에서 이 법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

3. 상환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안전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할 것

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4. 준비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할 것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준비자산을 상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는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이사(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진술과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분기별로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한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준비자산을 상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준비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⑨ 준비자산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⑩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자 지급 금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할인금, 적립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계산으

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제1항의 이자로 본다.

제18조(상환의무 및 절차)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청구를 받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상환과 관련된 정책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상환청구 절차
2. 상환청구 요건
3.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환금액이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
4. 상환청구가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시 의무와 책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는 국내에

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적격 요건에 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디지털자산 정보의 공시 여부 및 정도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이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가치안정 구조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하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이하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라 한다)의 외국 법령에 따른 인가 등에 관한 정보
  2.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보유 현황
  3.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방지 체계 구축 현황
  4. 이용자 보호 방안 및 분쟁해결 절차 구축 여부
  5. 외국 법령 위반 사실 존부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의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의 원문 또는 자료의 원문이 게재된 인터넷 주소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항에서 정한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내용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시된 사항을 정정하고 정정된 내용과 함께 정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이용자 보호

제20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해상충 방지 관리)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발행하고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성 확보의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이용자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그 밖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안전한 전자적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 · 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험의 가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킹 ·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백서 또는 상품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취득하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2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장 감독 · 검사 및 처분

제26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지원 중단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또는 조세포탈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해당 자산의 발행·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또는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승인 및 보고)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 및 제2항의 보고의 기준·방법, 그 밖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량에 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또는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건전경영지도) 금융위원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보고)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운영실패 시 처리 및 조치권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

행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발행되는 분산원장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의 장애, 전산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발행되는 분산원장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준비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서상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금액의 100분의 3(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의 가치 또는 구성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백서, 상품설명서 및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영업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와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권한

제35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중 통화 및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 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중 외환 및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량 및 유통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준비자산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금융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금융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이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7조(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장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

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
- 제12조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제13조를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백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를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우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적법하게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제6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검사·명령·요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 기피한 자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지원하고 있는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